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2월 1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정순기 의원, 김용술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(안 제2조 제1호, 안 제2조제2호, 안 제9조제1호).
- 조명 정비(안 제3조, 안 제7조).
- ‘위기대응 협의체’의 기능 추가(안 제4조제3호 신설).
-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신설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-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8조).
- 자구 정비(안 제9조제4호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9조제1호에서는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정비하고
-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위기대응 협의체 기능에 우울·불안·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그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(2024.7.3. 시행)에 맞춰 부칙에 규정함.
- 아울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함.
-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